

산업안전보건관리의 정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제10조)

산업재해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산업재해 발생기록 보존 (제10조)

- ☞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 ☞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약 신청서 사본 (재해 재발 방지계획 첨부)으로 대체 가능
- ☞ 재해 재발방지 계획

☞ 작업 중지 조치 (제26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으로부터 대피 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다시 작업 시작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조업 재해다발 상위 5대 업종 재해현황

구분	2016년		전년 대비 증감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제조업 전체	26,142	408	-869	-20
비금속광물제품제조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388	72	-195	0
기계기구제조업	3,962	45	-265	-14
화학제품제조업	2,397	41	34	-4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2,345	27	-347	-2
식품제조업	2,184	14	-18	-6

✂ 제조업 5대 재해유형 및 예방대책

01. 끼임 | 기계설비의 위험한 부분에 센서,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등
02. 화재 폭발 | 인화성 물질 등을 취급하는 설비, 탱크 등은 누출이 없도록 조치
03. 물체에 맞음 | 지게차로 중량물 운반시 전용 팔레트 등으로 포장·운반 실시 등
04. 떨어짐 | 대형설비나 제품 위에서의 작업시 고소작업대 등 전용 승강설비를 사용 및 작업발판 설치 등
05. 부딪힘 | 지게차 운행시 운전자 시야 확보 및 과속 금지 조치 등

2017-교육미디어-451

기관 안내 및 문의처

고용노동부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고용노동부 본부	044.202.7738	경기지청	031.259.021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02.2231.0009	평택지청	031.617.9010
서울강남지청	02.584.0009	부천지청	032.714.8700
서울동부지청	02.403.0009	안양지청	031.463.7300
서울서부지청	02.2077.6112	안산지청	031.486.0009
서울남부지청	02.2639.2110	성남지청	031.788.1505
서울북부지청	02.950.9711	의정부지청	031.850.7713
서울관악지청	02.3281.3282	고양지청	031.931.280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051.850.6310	강원지청	033.258.3562
부산동부지청	051.559.6600	강릉지청	033.650.2500
부산북부지청	051.309.1575	원주지청	033.769.0832
창원지청	055.239.6520	태백지청	033.552.8601
울산지청	052.228.3812	영월출장소	033.371.6220
양산지청	055.387.0802	광주지방고용노동청	062.975.6200
진주지청	055.752.5701	전주지청	063.240.3400
통영지청	055.645.0009	익산지청	063.839.0009
대구지방고용노동청	053.667.6310	군산지청	063.450.0510
대구서부지청	053.605.9000	목포지청	061.280.0100
포항지청	054.284.7991	여수지청	061.6500.109
구미지청	054.450.350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042.480.6212
영주지청	054.639.1111	청주지청	043.299.1114
안동지청	054.851.8012	천안지청	041.560.2800
충부지방고용노동청	032.460.4500	충주지청	043.845.7760
인천북부지청	032.540.7920	보령지청	041.931.6640

안전보건공단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공단 본부	052.703.0697	충북지역본부	032.510.0587
서울지역본부	02.6711.2916	경기지사	031.259.7178
서울북부지사	02.3783.8350	경기북부지사	031.828.1943
강원지사	033.815.1058	경기서부지사	031.481.7555
강원동부지사	033.820.2552	경기동부지사	031.785.3375
부산지역본부	051.520.0547	부천지사	032.680.6571
울산지사	052.226.0510	대구지역본부	053.609.0570
경남지사	055.269.0516	대구서부지사	053.650.6813
경남동부지사	055.371.7500	경북동부지사	054.271.2012
광주지역본부	062.949.8713	경북지사	054.478.8063
전북지사	063.240.8524	대전지역본부	042.620.5678
전북서부지사	063.460.3616	충북지사	043.230.7113
전남동부지사	061.689.4914	충남지사	041.570.3400
전남지사	061.288.8713		
제주지사	064.797.7524		



작업 전 안전점검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조선조선 코리아



제조업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2016.10.28.부터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제가 시행되었으며, 등록된 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http://www.moel.go.kr>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보상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 ('교육'으로 검색)

산업안전보건관리의 정의

☆ 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란?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이나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안전보건관리?

산업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재해 및 직업병을 예방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관리하는 것

산업안전보건 정보자료 제공

⚠ 안전·보건표지 부착 (제12조)

사업주는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등을 위해 안전보건표지를 부착



※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참조

✎ 안전·보건 교육 실시 (제31조)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 실시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 교육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8 참조

재해예방 활동

🏢 사업장 안전·보건조치 (제23조, 제24조)

-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등
- ⇒ 하역, 운송, 조작, 운반해체, 중량물 취급시 등
- ⇒ 추락, 붕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등
-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 기압 등에 대한 예방조치

🔍 유해·위험기계 안전검사 (제36조)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에 대해 안전검사 실시

검사대상	검사주기
크레인(이동식 크레인 제외)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제외) 곤돌라	최초 검사는 사업장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그 후 2년마다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고소작업대	최초 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 후 3년 이내, 그 후 2년마다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최초 검사는 사업장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그 후 2년마다 (공정안전 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 위험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제33조)

유해·위험기계에 대한 방호조치

기계·기구	방호 조치 사항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지게차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작동부분 돌기	물힘형 또는 덮개부착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	덮개부착 또는 방호망
회전기계의 물림점	덮개 또는 울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제41조)

- ⇒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경우 MSDS 작성·제공
- ⇒ 화학물질 취급 작업장 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MSDS 게시·비치
- ⇒ 화학물질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취급사업주는 화학물질 담은 용기 등에 경고 표지 부착
- ⇒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 작업에 근로자 배치시, 새로운 화학물질 도입된 경우, 유해성·위험성 정보 변경 시 근로자 교육 실시

🏠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건강진단 (제42조, 제43조)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한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실시

작업환경측정: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

일반건강진단: 모든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될 예정인 근로자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아파트 경비원, 편의점 판매원, 요양보호사 등 야간작업 종사자에 대해 실시(배치전, 배치후 첫번째 6개월 이내, 그후 12개월)

※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고시 등 참조